

		<h1>보도자료</h1> <h2>1월 30일(수) 건정심 종료 후</h2>		
배 포 일	2019. 1. 30. / (총 7매)		담당부서	예비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급여과
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	과 장	손 영 래	예비 급여과	044-202-2670
	담당자	강 준 혁		044-202-2667
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	과 장	곽 명 섭	보험 약제과	044-202-2750
	담당자	송 영 진		044-202-2753
치료재료 급여·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	과 장	이 중 규	보험 급여과	044-202-2730
	담당자	강 석 원		044-202-2734

<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>

**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
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**

- 보건복지부,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(1.30) -

- '19.2월부터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지며,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·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도 실시한다.
- 신장세포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인 '카보메티스'와 응급수술 등 긴급처치로 인한 출혈 발생 시 복용 중인 항응고제(프라다사캡술) 효과상쇄를 위한 '프락스바인드주사'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2월부터 적용되고,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'엑스탠다'에 대한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'23년 1월까지 연장된다.

■ 요양급여 여부 등을 결정 및 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·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·의결해 2.13(수)부터 시행한다.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1월 30일(수)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'건정심', 위원장 : 권덕철 차관)를 열어, △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△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△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.

□ 각 안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>

-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('17.8월)에 따라 '18.4월 간,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'19.2월부터는 콩팥(신장), 방광, 항문 등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.
 - 콩팥(신장), 부신, 방광, 소장, 대장,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(암·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)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,
 - '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*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,
 - * 신장결석, 신낭종, 충수돌기염(맹장염), 치루, 탈장, 장종첩 등
 -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~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~5만 원 수준,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.
 - * <붙임>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참고

<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(하복부 초음파-항문) >

구분		의원	병원	종합병원	상급종합
보험적용 이전*	최소~최대	4~8만 원	5~11만 원	7~14만 원	9~19만 원
	평균	5만6900원	7만7200원	9만6500원	13만9100원
보험적용 이후**	외래(30~60%)	2만6300원	3만2900원	4만2800원	5만3400원
	입원(20%)	1만7500원	1만6400원	1만7100원	1만7800원

*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, ** 2019년 환자부담금

<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(비뇨기 초음파-신장·부신·방광) >

구분		의원	병원	종합병원	상급종합
보험적용 이전*	최소~최대	4~8만 원	6~11만 원	7~17만 원	8~21만 원
	평균	5만6300원	7만9200원	10만5800원	15만5000원
보험적용 이후**	외래(30~60%)	2만3600원	2만9500원	3만8400원	4만8000원
	입원(20%)	1만5700원	1만4700원	1만5300원	1만6000원

*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, ** 2019년 환자부담금

□ 구체적으로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, 맹장염,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,

○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,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*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.

*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·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, 직장·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

- 향후 관련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,

- 다만,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(80%)한다.

*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.24회(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)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

□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.

○ 하복부·비뇨기 분야 중증·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%~15% 인상하고,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(상·하복부, 비뇨기)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□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, “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~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과와 공동 관리·점검(모니터링)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,

○ 이와 함께, '19년 2월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, 자궁,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 신약 등재 및 위험분담 약제 심의 >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‘카보메틱스(입센코리아(주))’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‘프락스바인드주사(한국베링거인겔하임(주))’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이 의결되었다.

[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]

- 카보메틱스주(성분명 : cabozantinib)
 - “이전에 VEGF(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) 표적요법의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의 치료”에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17만450원(20, 40, 60mg)
 - *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환자 부담 약 530만 원(제약사 신청가로 산출)
 - 건강보험 적용시 월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
- 프락스바인드주사(성분명 : idarucizumab)
 - 항응고제(프라닥사캡슐) 투여환자에게 응급수술 또는 긴급처치 등에 따른 출혈발생시 항응고 효과를 상쇄하여 응급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제

□ 이와 함께,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던 '엑스탄디엔질캡슐*(한국아스텔라제약(주))'(전립선암 치료)의 위험분담 계약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·의결하였다.

* 위험분담계약 중 환급형(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)으로 '14.1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

[약제 정보]

○ 엑스탄디엔질캡슐(성분명 : enzalutamide) : 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

○ 위험분담계약은 4년(최대 5년)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,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(위험분담대상 여부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.

○ 엑스탄디엔질캡슐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*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,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계약 협상 등을 실시하였다.

*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·치료법 없으며,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·희귀질환 치료제

□ 보건복지부는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를 개정(1.31)하여 2월 1일(금)부터 '카보메틱스'와 '프락스바인드주사'의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, '엑스탄디엔질캡슐'의 건강보험 적용은 '23. 1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<치료재료 등재 및 상한금액 등 결정>

□ 요양급여여부 등을 결정* 및 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·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·의결 하였다.

* 식약처에서 허가·인증을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 신청하여야 함(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등)

(단위 : 품목)

총계	결정			조정 상한금액 조정 등	직권조정 급여
	급여	비급여	행위료포함		
165	120	37	1	6	1

○ 특히, 이번 건정심에서는 기술을 혁신한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가치평가를 신청한 5개 품목*의 상한금액을 가산(25~40%)하였다.

* 메디허니(MEDIHONEY, 3품목), 흡션프리(SORPTION-FREE), 옥토퍼스 RF 전극(OCTOPUS RF ELECTRODE)

□ 이번 결정 사항은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를 개정하여 2.13.(수)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붙임

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

연번	내용
1	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A 상급종합병원 에 입원한 김씨가 비뇨기-신장·부신·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 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급여화 이후 1만6000원 부담(13만4000원 경감)
2	고열, 복부통증, 배뇨곤란으로 B 상급종합병원 에 입원한 오씨가 요로폐색으로 인한 수신증 진단을 위하여 비뇨기-신장·부신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 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급여화 이후 1만4460원 부담(13만5540원 경감)
3	육안적 혈뇨, 배뇨 불편감으로 C 상급종합병원 에 방문한 박씨가 외래진료로 방광염을 의심하여 비뇨기-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2만 원 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급여화 이후 3만9100원 부담(8만900원 경감)
4	우하복부 급성 복통 및 반동 압통 증상으로 D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5세 여아에게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여 하복부-충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7만 원 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급여화 이후 4만9560원 부담(12만440원 경감)
5	구토와 식욕부진, 복통 증상으로 E 종합병원 에 방문한 8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장중첩증을 의심하여 하복부-소장·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1만 원 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급여화 이후 4만3600원 부담(6만6400원 경감)
6	항문 및 그 주변부의 불편감, 통증 및 배농소견이 있어 F 병원 을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치루를 의심하여 하복부-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원 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급여화 이후 3만2900원 부담(4만7100원 경감)